

【헤이세이29년도(2017년도) 취학원조비·특별지원교육 취학장려비 신청 접수 안내】

오오쯔시 교육위원회

시립 초중학교 (국립 초중학교, 현립 중학교) 에 취학중인 아동 생도의 가정중에서, 경제적으로 곤란한 가정에, 취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원조하는 제도 (취학원조제도) 를 안내합니다. 해당한다고 생각되는 분 중 수급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의 요령으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단, 제반 요건에 따라서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신청에 대하여

·신청은 매년도 필요합니다.

·H28(2016)년도에 인정된 분일지라도, 신청이 없으면 H29(2017)년도의 심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신청 방법에 대하여

·재적하고 있는 초중학교, 지소, 학교 교육과에 제출하여 주십시오. **우편으로는 절대 신청하지 마십시오.**

·H28년도에 신청이 있었던 보호자에 대하여, H29년도 취학 원조비 수급 신청서를 자택에 우송합니다.

·신규로 신청하시는 분은, 재적중인 초중학교, 지소, 학교 교육과에 신청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2월27일 이후에 초중학교, 지소, 학교교육과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3. 신청 기한에 대하여

·H29(2017)년3월2일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3월1일 이전의 제출은, 접수되지 않으므로 양해하여 주십시오.

·3월2일 이후, 신청은 수시로 접수합니다. 아래와 같이, 접수일의 다음달 부터로 결정이 됩니다.

- H29(2017)년3월2일(목) ~ H29(2017)년3월31일(금)까지의 접수분 ⇒ 4월 인정
- H29(2017)년4월3일(월) ~ H29(2017)년5월1일(월)까지의 접수분 ⇒ 5월 인정
- 매월2일 ~ 익월(다음달)1일까지의 접수분 ⇒ 익월(다음달) 인정

※신입학 아동 생도 학용품비의 급부는, 4월 이후가 아니면 수급할 수 없습니다.

※수학여행비의 급부는, 수학여행이 실시된 달의 인정이 없으면 급부되지 않습니다. 4월 10일부터 수학여행에 가서 수학여행비의 급부를 받는 경우에는, 3월2일(목)~3월31일(금)에 신청하여, 4월 1일부로 인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조건입니다.

4. 신청에 필요한 것

【전원】

- ① 신청서
- ② 보호자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통장이 없는 경우, 계좌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현금카드의 복사본도 가능)

유우표 은행인 분은, 계좌이체용 정명, 정번, 예금종목,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란의 사본을 첨부.

※우체국 고유의 기호나 번호는 불가.

- ③인감 (막도장도 가)



【해당자에 한하여】

- ④ H28(2016)년분 월세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심사에 있어 월세액의 공제를 희망하는 분)

H28(2016)년1~12월간, 거주한다는 내용을 계약한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

※월세 증명이나 이체액을 알수 있는 통장의 사본등은 불가.

- ⑤ 그외, 신청서 겉면에 있는 조치 (아동 부양 수당의 요건을 제외)를 받은 분은, 해당하는 서류 상세한 내용은 교육위원회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 ⑥ 4월2일 이후, 신청서 겉면에 있는2(H28(2016)년8월분 이후, 오오쯔시로부터 아동부양수당을 받고 있는)의 이유로 신청하시는 분은, 아동 부양 수당서의 사본

※H29년1월1일자로 오오쯔시에 주민등록이 없는 분은, 1월1일 시점의 주소지 시구촌으로부터 H29(2017)년도 소득증명서 (수입액, 소득액, 사회보험료 공제액이 명기되어 있는 것) 를 취득하여, 후일, 제출하여 주십시오.

제출기한 : 6월 12일(월)(제출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학교교육과에 연락하여 주십시오.)

5. 원조 내용

·4월 인정분 년액입니다. 인정 달에 따라서는 감액이 됩니다.

·학교에 납부하는 돈을 면제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학교급식비	학용품비등	신입학학용품비	교외활동비	통학비	수학여행비	체육실기용구비	의료비
초등학교	실비액 보호자 부담분을 급식비 공회계에 직접대체	1학년생 12,960엔 그외의 학년 15,120엔	1학년생으로 4월인정에 한하여 20,460엔	3,620엔 이내	실비액 편도 초등학생 4km이상 중학생 6km이상으로 공공교통기관 이용자에 한함	21,490엔 이내	/	학교를 경유하여 의료권 발행
중학교	/	1학년생 24,480엔 그외의 학년 26,760엔	1학년생으로 4월인정에 한하여 23,550엔	6,100엔 이내	57,590엔 이내	유도 7,500엔이내 경도 51,940엔이내 스키 37,330엔이내		

뒷면에 계속

6.수급되는 세대의 기준

·취학원조비 제도는 세대원 전원의 총수입액에 따라 심사를 행합니다.아래의 표는,대략 인정의 기준이 됩니다.신청 전에,인정 기준 범위인지 아닌지를 문의하셔도,정확한 심사가 되지 않으므로,확답을 할 수 없습니다.

세대	가족구성	총수입액 (종합소득 공제전 금액)
3인	부38세·모33세 아이9세(초등학교 4학년생)	약390만엔 사회보험료 36만엔
4인	부35세·모30세 아이6세(신초등학교 1학년생)·아이2세	약430만엔 사회보험료 45만엔
5인	조부69세·조모68세·부45세·모41세 아이12세(신중학교 1학년생)	약520만엔 사회보험료 59만엔

7.세대원 구성에 대하여

·다음 ①.②.③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세대 구성원으로서,신청서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구분	주민표상의 세대		생계		세대원으로서의 기재
	동일	별	동일	별	
①	○		○		필요
②	○			○	필요
③		○	○		필요
④		○		○	불필요

·세대현황에 기입이 없는 경우라도,주민표가 동일하면 원칙적으로 동일 세대로서 심사합니다.「조부모와 동일 세대 이나 생계는 별도」 등의 경우에는 동종(같은 종류) 동월(같은 달)의 공공요금(전기·수도·가스대금) 영수증(각 세대 각각 3개월분) 사본이 있으면,별도 세대로서의 인정이 가능합니다. (첨부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동일 세대로서 심사합니다.)

또한,명의는 각각의 세대에 속하는 분과 일치할 필요가 있습니다.또 단신부임으로 별거중인 경우에는,생계가 동일하므로,그분의 수입도 심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8.급부 계좌 변경에 대하여

·학교 수금 등의 미납이 발생할 경우에는,급부 계좌를 학교장 계좌로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9.특별 지원 교육 취학 장려비에 대하여

·취학원조비는 다른 장애가 있는 아동의 보호자에 대하여,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그 세대의 소득액등에 따른 필요 경비 일부를 원조하는 특별지원교육 취학장려비가 있습니다.

·H29(2017)년도부터,학교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3에 규정한 장애의 정도에 해당하며,통상(보통) 학급에 재적하고 있는 경우에는,특별지원교육 취학장려비의 수급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수급을 희망하는 경우에는,4월에 들어가면,바로 교육위원회 학교교육과에 연락하여 주십시오.연락을 주시면,희망하신 보호자에 대해서는,필요 서류등을 다시 안내하겠습니다. (장애의 정도에 관해서는,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또한,최초 접수 기간은 H29(2017)년4월10일(월)부터H29 (2017)년4월28일(금)입니다.그후,신청은 수시로 접수하오나,급부액이 감액됩니다.

※취학원조비와는 신청 기간이 다르므로 유의하여 주십시오.

※특별 지원 학급에 재적하고 있는 아동 생도에 관한 특별지원교육 취학장려비의 신청에 관해서는,4월에 들어가면 학교를 통해 안내 하겠습니다.

구분	학교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3에 규정하는 장애의 정도
시각장애자인	양쪽 시력이 대략 0.3미만 또는 시력 이외의 시기능 장애가 고도인 자 중,확대경등을 사용해도 통상의 글자,도형등의 시각적 인식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정도의 자
청각장애인	양쪽 귀의 청력 레벨이 대략 60데시벨 이상인 자 중,보청기를 사용해도 통상의 말하는 소리를 이해할 수 없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정도의 자
지적장애인	1 지적 발달의 지체가 있어,타인과의 의사소통이 곤란하여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원조를 필요로 하는 정도의 자 2 지적 발달의 지체의 정도가 전후에 게재한 정도에 달하지 못한 자 중,사회생활의 적응이 현저히 곤란한 자
지체장애인	1 지체 부자유한 상태가 보장구를 사용해도 보행,필기등 일상생활의 기본적 동작이 불가능 또한 곤란한 정도의 자 2 지체 부자유한 상태가 전후에 게재한 정도에 달하지 못한 자 중,상시(항상) 의학적 관찰 지도를 필요로 하는 정도의 자
병약자	1 만성 호흡기질환,신장질환,신경질환,악성신생물 그외 질환의 상태가 계속되어 의료나 생활의 규제를 필요로 하는 정도의 자 2 신체 허약 상태가 계속되어 생활의 규제를 필요로 하는 정도의 자

(신청에 관한 유의사항에 대하여)

·「오오쓰시 특별지원교육 대상 아동 교육지원회」에 있어,학교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3에 규정한 장애의 정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아동이 대상입니다.

※H28(2016)년도 혹은 H29(2017)년도에 취학 상담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수급이 되지 않습니다.상담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현재,재적하고 있는 학교·유치원·보육원을 통해 신청하여 주십시오. (이때,취학 상담 실시는 6월 이후가 됩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아래로 연락하여 주십시오.